

case
3

F-클램프

요약

사례명	F-클램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674 (2021.02.24.)
사실관계	한국에서 중국산 강철 막대로 만든 클램프 본체와 수직 암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중국에서 추가 가공, 연마, 기타 부품 조립을 통해 최종 제품인 F-클램프 생산
장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종 제품인 F-클램프의 핵심 기능은 한국에서 생산된 클램프 본체에 의해서 부여되며, 클램프 본체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강철 막대에 행해진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는 한국임클램프 본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그 형태와 외관이 최종 제품인 F-클램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표면 처리 및 부품 결합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 있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인 한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판정사례

사례명 [F-클램프]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12674 (2021.02.24.)

사실관계

요청자 Tractor Supply Company (대리인: Lowenstein Sandler LLP)

제품명	• F-클램프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램프 본체 • 조절 가능한 수직 암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사 • 바/손잡이 • 회전 패드
용도	• 목공 작업에서 목재를 임시로 고정할 때 사용되는 수공구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산 강철 막대를 한국으로 수입
2. 한국에서 중국산 강철 막대 이용하여 고정 조를 포함한 L자 형태의 클램프 본체 및 직선 형태의 조절 가능한 수직 암 제조
3. 클램프 본체 및 수직 암 중국으로 수출
4. 중국 제조 공정
 - 클램프 본체 및 수직 암에 대해 추가 가공, 연마, 열처리 및 도금 공정 수행
 - 중국산 나사, 바/손잡이, 회전 패드를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5.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v. United States*, 681 F.2d 778, 782 (1982)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 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단순한 조립 작업은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310,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사례 플렉스 소켓(flex sockets), 스피더 핸들(speeder handles), 플렉스 핸들(flex handles) 제작용 특정 수공구 부품들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열처리, 표면 세척, 녹 및 부식 방지 처리 등 수행

판결 해당 부품들이 대부분 수입 전에 냉간성형(cold-formed) 또는 열간단조(hot-forged) 방식으로 최종 형상으로 가공되어 있었으며, 미국으로 수입 후에 수행된 가공(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표면 세척을 위한 샌드블라스트 처리, 녹 및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도금 처리 등)은 수입 부품의 **명칭**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가공 후 물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물품의 **용도**는 수입 시점에 이미 정해졌다고 판단하여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 CBP는 해당 사례에서 실질적 변형의 판단을 위해 HQ H309984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사례 중국으로 수입된 베트남산 알루미늄 클램프 헤드를 열처리, 코팅한 후 중국산 수평 금속 바, 디스크 클러치, 스프링과 함께 조립하여 바 클램프를 생산함. 이때, 클램프 헤드는 수입될 시점에서 이미 완성된 바 클램프와 거의 동일한 모양, 형태 및 크기를 유지함

판정 실제 목재 조각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클램프 헤드이며, 중국산 수평 금속 바, 디스크 클러치, 스프링은 헤드가 목재를 고정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함. 특히 베트남산 클램프 헤드는 중국에서의 추가 가공을 거치면서 형태, 구조, 크기에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결과

- ▣ CBP HQ H309984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종 제품인 F-클램프의 핵심 기능은 한국에서 생산된 클램프 본체에 의해서 부여되며, 클램프 본체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산 강철 막대에 행해진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는 한국임
- ▣ 또한 클램프 본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될 당시 이미 그 형태와 외관이 최종 제품인 F-클램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 반면, 중국에서 수행된 표면 처리 및 부품 결합 공정은 단순 공정으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 있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에 대한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클램프 본체의 원산지인 한국임

결론

-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핵심 구성 요소가 생산된 한국임

II 시사점

- 공구와 같은 물품의 경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외국산)가 가공국으로 수입될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의 형태와 크기 및 모양 등을 가지고 있고, 가공 후에도 이러한 형태, 크기 및 모양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움

III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2674 (2021.02.24.), <https://rulings.cbp.gov/ruling/H312674>
- CBP Ruling HQ H309984 (2020.09.11.), <https://rulings.cbp.gov/ruling/H30998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